

2005. 7

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- 기 간 : 2005. 6. 30(1일간)
- 장 소 :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
- 대 상 : 의회사무과

의회운영위원회

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I. 감사의 목적

-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,
-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, 지방자치실현에 역점

※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제17조의 2-5
-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

I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기간 : 2005. 6. 30 (1일간)
2. 감사장소 :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
3. 감사반 :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(5명), 전문위원, 보조2명
4. 대상기관별 감사일정

일 시	대 상 기 관	비 고
6. 30(목) 14:00	•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	

5. 진행순서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(이선 위원장)
- 의회사무과장 선서 및 간부소개
- 업무보고(의회사무과장)
- 추가자료 요구
- 질의답변
- 감사종료 선언

III. 감사결과 처리의견

- 지적사항 없음.

2005. 7

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- 기 간 : 6. 27 ~ 7. 1(5일간)
- 장 소 : 총무위원회 회의실
화순읍 회의실
- 대 상 : 군본청 8개실과소, 화순읍
- 감사결과
 - 본 청 : 시정 7건, 건의 14건

총 무 위 원 회

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

I. 감사의 목적

-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,
-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.

※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제17조의 2~5
-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

I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기간 : 2004. 6. 27 ~ 7. 1(5일간)
2. 감사장소 : 총무위원회 회의실, 화순읍 회의실
3. 감사반 : 총무위원회 소속의원(6명), 전문위원, 직원(2명)
4. 대상기관별 감사일정

일 시	대 상 기 관	비 고
6. 27(월) 10:00	• 기획감사실, 총무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 답변	
6. 28(화) 10:00	• 재무과,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 답변	
6. 29(수) 10:00	• 문화관광과,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 답변	
6. 30(목) 10:00	• 환경과, 보건소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 답변	
7. 1(금) 10:00	• 화순읍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 답변	
7. 5(화)	감사결과 보고서 작성	

5. 진행순서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(남은기 위원장)
- 피 감사 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
- 업무보고(실과소장, 화순읍장)
- 추가자료 요구

- 질의답변
- 감사종료 선언

III. 감사결과 처리의견

1.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

- 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잘못 추진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자체없이 처리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-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, 단계적으로 처리하되,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.

■ 각종 보조금지원시 제반 구비서류 보완 철저 (총무과)

- 각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시는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지급조례 제19조의 보조금정산 및 검사 규정에 의한 제반 구비서류를 보완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도록 철저를 기할 것.

■ 해외 출국대상자 선정시 의회와 협의 선정 방안검토 (총무과)

- 공무원 등 각종 해외 출국대상자를 선정시 집행부에서만 단독으로 선정하여 출국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출국자를 선정 해외 출국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망.

■ 해외 연수자에 대한 연수보고서 작성 의무화 (총무과)

- 해외연수자에게 해외를 방문한 후 연수개요, 연수자료, 각종자료 및 사진 등을 첨부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기바람.

■ 읍면 공무원수를 정원에 알맞게 배치 방안강구 (총무과)

- 읍면의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면과 더 적은 면이 있으므로 정원에 맞도록 인원배치 대책을 강구 하기바람.

■ 모든축제의 단일화 방안검토 (문화관광과)

-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축제는 걷기대회, 달리기대회 등 축제를 분산하여 시행하지 말고 앞으로는 모든 축제를 일원화하여 화순군의 축제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망.

■ 국공유지등 도면 관리 철저 (종합민원과)

- 국공유지 등 분할되어 있는 도면을 합병하여 민원인들의 사용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실과와 협의하여 정리하기 바람.

■ 부동산 중개업 위원회 정비 철저 (종합민원과)

- 화순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있으나 이에 따른 위원회는 미설치되어 있는바 위원회 정비에 철저 바람.

2. 건의 사항

- 본 건의사항은 감사결과 우리 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
-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기 바람.

■ 읍면 종합감사시 잘한 공무원 표창 방안강구 (기획감사실)

- 읍면 종합감사시 잘못된 사항만 지적하여 문제하지 말고 잘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바람.

■ 각종 공사와 관련 감사기능 강화 요망 (기획감사실)

- 만연신문 건축폐기물 계재, 보 처리현황을 해당실과에만 미루지 말고 감사 기관에서도 감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바람.

■ 화순군 공공기관 유치 방안강구 (총무과)

- 지역혁신 사업에 따른 정부공공기관을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강구 하기바람.

■ 이장·부녀회장등 겸직자 배제 유도 방안강구 (총무과)

- 이장, 부녀회장, 새마을 지도자등 겸직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장과 겸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도하기 바람.

■ 각종사업의 조기착공 및 마무리 철저 (문화관광과)

- 문화관광과의 모든 사업이 현재 거의 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년말 안에 사업의 마무리가 의심스러우니 조기 착공하여 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

■ 관광 안내소 재정비 철저 (문화관광과)

-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가 유명무실 하므로 관광안내소를 필요

한 곳으로 재지정 실질적인 안내소가 되도록 정비 철저 요망.

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철저 (사회복지과)

-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점은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본 사업이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

■ 유원지 화장실 관리 철저 (환경과)

- 읍면에 있는 유원지의 이동식 화장실 관리가 부실한 것 같으니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읍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.

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기 완공 (환경과)

- 한천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당초계획보다 소송 등에 의거 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바람.

■ 한천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민 민원 대책강구 (환경과)

- 한천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의 통행 반대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.

■ 공중 보건의 지도감독 철저 (보건소)

- 읍면보건소의 공중보건의 근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근무일지를 쓰도록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 바람.

■ 앵속 단속 철저 (보건소)

- 2005년도 앵속 적발면의 3개면에 대하여 감시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, 또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

■ 자활 공공근로자의 많은 사람 참여기회 부여 (화순읍)

- 자활공공근로자의 선정기준에 맞추어 많은 사람이 자활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바람.

■ 방역소독 대행업자 지도감독 철저 (화순읍)

- 방역소독 차량의 운행일지를 방역대행 업자에게 작성토록 하는 등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

2005. 7

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- 기 간 : 6. 27 ~ 7. 1(5일간)
- 장 소 : 산업·건설위원회 회의실
북면 회의실
- 대 상 : 군본청 7개실과소, 북면
- 감사결과
 - 본 청 : 시정 11건, 건의 4건
 - 북 면 : 애로 및 건의사항 2건
당부사항 3건

산업·건설위원회

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I. 감사의 목적

-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,
-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, 지방자치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.

※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제17조의 2~5
-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

I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기간 : 2005. 6. 27 ~ 7. 1(5일간)
2. 감사장소 : 산업·건설위원회 회의실, 북면 회의실
3. 감사반 : 산업건설 소속의원(6명), 전문위원, 직원2명
4. 대상기관별 감사일정

일 시	대상기관	비고
6.27(월) 10:00	• 농산과,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	
6.28(화) 10:00	• 건설과, 재난안전관리과	"
6.29(수) 10:00	• 도시경제과, 지역개발과	"
6.30(목) 10:00	• 산림과	"
7. 1(금) 14:00	• 북면	"

5. 진행순서

-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(조현수 위원장)
- 피감사 기관선서 및 간부소개
- 업무보고(실과소장, 북면장)
- 추가자료 요구
- 질의답변
- 감사종료 선언

III. 감사결과 처리의견

1.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

- 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잘못 추진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-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, 단계적으로 처리하되,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.

<농산과>

-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공급 부족
 - ▶ 고추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의 공급량이 부족하므로 지원방안 강구
- 원예용 중형관정 공급 부족
 - ▶ 과수 등 원예농가 육성차원에서 원예용 관정 확대지원 방안 강구
- 저온저장고 공급 부족
 - ▶ 농업용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농산물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급량 확대 지원방안 강구

<산림과>

- 사무분장 준수
 - ▶ 하천정비는 治水의 목적이므로 전문부서(재난관리과)의 전문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토록 함이 타당하나, 治山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(산림과)에서 치수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모순이므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무분장 부서에서 추진토록 시정 조치
- 군 직영사업 적정성 검토
 - ▶ 각종 공사 시행시 가급적 직영사업을 지양하고 입찰 등으로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시정 검토
-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일원화 검토
 - ▶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등 관리업무를 도시계획 지구내에서는 도시경제과에서, 그 외 지구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책임한계는 물론 예산집행 등의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이 예상되므로 업무 일원화 방안 검토

<재난안전관리과>

- 상수도 누수대책 강구
 - ▶ 일부 지역의 상수도 누수율이 80%이상 되는 등 소중한 물 손실과 많은 예

산성비 등 피해가 크므로 누수율이 높은 지역은 정밀 점검하여 원인 분석과 함께 시급한 방지대책 강구

○ 하자보수 기간내 정밀진단 보수철저

- ▶ 향후 상수도 준공검사시 누수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또한 하자 보수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시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수토록 조치

○ 춘양상수도 과다누수에 따른 원인 분석

- ▶ 춘양 정수장은 최근에 준공되었음에도 누수 현상이 높이 나타나고 있는바, 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 조치하고 또한 시공에서 준공까지의 추진과정을 제시하기 바람.

<지역 개발과>

○ 사무분장 준수

- ▶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법에 의하여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무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만연제 저수지 준설공사를 건설과(농지담당)가 아닌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 조치

○ 군 직영사업 재고

- ▶ 군 직영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 관련 법률에 의거 건설업 등록업체에서 계약하여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만연제 준설공사 등의 경우와 같이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기므로 시정 검토

2. 건의 사항

- 본 건의사항은 감사결과 우리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
-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기 바람.

<농산과>

○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철저

- ▶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소비자와 생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등 적극적인 홍보 지도

○ 친환경시범단지 시범운영 개선방안 검토

- ▶ 친환경시범단지 조성 업무를 전남도의 지침에 의하여 농업관련 부서(농산과)

에서 추진하고 있으나, 보다 내실 있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술부서(농업기술센터)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습득된 기술분야 등을 농업관련 부서로 이전하여 추진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므로 적극 검토

<산림과>

- 한천 자연휴양림 입장료 잡정적 非정수 검토
 - ▶ 한천휴양림이 개장되었으나 소수의 이용객으로 활용 실태가 미약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활성화 단계로 진입할 때까지 입장료를 잡정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

<도시경제과>

-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방안 강구
 - ▶ 농공단지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각급 기관단체로 하여금 적극 구매도록 협조 요청하고, 특히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등에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도록 하는 방안 강구

<북면>

■ 북면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

- 읍면장 지원사업비 확대 건의
 - ▶ 읍면장 포괄사업비(현행 5,000만원)가 너무 적어 읍면 행정에 어려움이 지대하므로 상향 조정 건의
- 노후비품 교체 예산지원 건의
 - ▶ 에어컨, 사무실 집기 등이 노후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크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 건의

■ 감사위원의 당부사항

- 북면은 기온의 차가 심하여 각종 재해 등이 항상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농작물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철저로 재해예방 만전
- 각종 위원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할 경우 지역 출신의원을 위촉한다면 중간역할은 물론 보다 폭넓고 발전지향적인 기구가 될 것이므로 방안 검토
-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보살피도록 당부